

의안 번호	2141	<b>[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5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8. 2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9. 8.(금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김세동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현장 서비스의 날」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운영 규정 신설 (안 제4조)
- 재료비 규정 신설(안 제6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현장 서비스의 날」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

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군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-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